

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상돈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2년 3월 8일
- 회부일자 : 2022년 3월 10일

3. 제안이유

- 북한이탈주민의 공공기관 등 채용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이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공무원 특별채용 규정 신설 (안 제4조의2)
- 인용조문 정비 및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(안 5조)
 - 「법률시행령」 제45조의2 → 「법률 시행령」 제42조의3
충청북도지방경찰청 → 충청북도경찰청,
- 이탈자, 띄어쓰기 수정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수정
 - 호선한다 → 선출한다, 보궐위원 → 새로 위촉된 위원,

- 사무관 → 팀장, 관계기관 → 관계 기관, 대해서는 → 대하여,
- 위임규칙 → 위임 규칙, 수탁자 → 위탁 받은 자

5. 검토의견

-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공공기관 등의 채용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며, 주요내용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용조문 정비 및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한 명칭을 변경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